

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9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10. 1.

발 의 자 : 김용재·최만용·허 식 의원
(찬성자 4인)

□ 제안이유

- 가.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부 정책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음에 따라
- 나.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등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시민자전거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(안 제13조)
- 나.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타시도 자전거 보험 관련 조례 현황

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시민자전거의 운영)”을 “(시민자전거 등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은 시민자전거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등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3조(시민자전거의 운영) ①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<u>제19조(민간단체 등 지원)</u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<u>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<u>제13조(시민자전거 등의 운영) ①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은 시민자전거 등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등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9조(민간단체 등 지원)</u>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타시도 자전거보험 관련 조례 현황

기관명	조례내용	보험가입	비고
대전광역시	<p>제7조의2(자전거 이용자보험)</p> <p>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,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 한다 < 2009.02.27 본조 신설 ></p>	<p>- 가입 일 : '09.05(1년간)</p> <p>- 가입대상 : 전시민</p> <p>- 인 원 : 1,482,240명</p> <p>- 보 험 료 : 588,449천원</p>	
창원시	<p>제9조(자전거의 보험)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/p> <p>① 창원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</p> <p>②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. < 2008.04.15 본조 신설 ></p>	<p>- 가입 일 : '08.09(1년간)</p> <p>- 가입대상 : 전시민</p> <p>- 대상인원 : 503,930명</p> <p>- 보 험 료 : 200,000천원</p>	
경기도 이천시	<p>제11조(자전거의 보험)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</p> <p>1. 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.</p> <p>2.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. < 2009.01.16 조례 제정 ></p>	<p>- 가입 일 : '09.3월(1년간)</p> <p>- 가입대상 : 전시민</p> <p>- 가입인원 : 196,633명</p> <p>- 보 험 료 : 136,363천원,</p>	
서울시 강남구	<p>제19조(자전거 보험)</p> <p>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/p> <p>1.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</p> <p>2.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</p> <p>② 제15조에 따른 공공자전거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 < 2009.05.29 본조 신설 ></p>	<p>- 보험가입 검토중</p>	